##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701 발의연월일: 2025. 3. 6.

발 의 자:이용우·이학영·장철민

김우영 · 김태선 · 박용갑

박홍배 · 임미애 · 전진숙

정혜경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훈령(행정규칙)인 「근로감독관 집무규정(산업안전보건)」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내규인 「재해 등의 기술적 원인조사 업무처리지침」에 따라 '재해조사의견서'(2024년 9월 '재해원인조사의견서'로 명칭 변경)를 작성하고 있으나, 법령상 명시적인 작성 근거는 부족한 상태임.

한편, 고용노동부는 2022년 11월 「중대재해 감축 로드맵」을 발표하고, 그 세부내용으로 '재해조사의견서 공개'를 포함하였으나, 그 후고용노동부는 2023년 1월 "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가능성이 상당하다"며 검찰 기소 이후에만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보도설명자료를 재차 배포하였음.

그러나 법원은 최근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 청을 상대로 사건 조사보고서, 내사보고서 및 수사결과보고서, 피의자 신문조서 등 각종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제기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, "통상적으로 알려진 수사의 방법이나 절차를 넘어 일반에게 공개될 경우 향후 범죄의 예방이나 정보수집, 수사활동등에 영향을 미쳐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므로, 이 사건 정보가 「정보공개법」 제 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"라는 이유로원고(민원인) 승소 결정하여 해당 수사자료들을 공개하도록 하였고(서울행정법원 2023.3.17. 선고 2022구합61069), 고용노동부도 이에 대해 "법원의 판결에 반박할 추가 증거자료가 없고, 법원의 판결로 정보공개 시 지청이 부담할 수 없는 법적 분쟁 위험이 해소되어 항소 포기및 법무부에 항소포기 지휘 건의"하여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였음.

아울러 현행 「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」과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은 행정기관인 조사위원회가 작성한 사고 조사보고서를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며, 사고조사는 사법절차 등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것이라는 취지도 명시하고 있음.

특히 중대재해 발생 시 오로지 "수사 중"이라는 이유로 각종 사고 관련 자료가 비공개되어 재해자와 가족의 알 권리가 장기간 침해되고, 이에 따라 배상·보상을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수사 종결 전까 지 사실상 불가하여 상당한 불이익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, 중 대재해 원인에 관한 재해조사의견서와 고용노동부의 수사결과보고서 를 조기에 공개하거나 최소한 재해자 및 가족에게 교부하여 실효적 구조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"통상적으로 알려진 수사의 방법 등을 넘지 않는 내용은 「정보공개법」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"는 법원의 결정 취지와,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수용의견, 「항공·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」 및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재해에 대한 재해조사의견서와 수사결과보고서를 법률에 따라 공개 또는 교부하도록 하려는 것임.

## 주요내용

- 가. 현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 행정 규칙(집무규정)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인 '재해조사의견서'의 법률 상 작성근거를 마련하고, 작성의무를 부과함(안 제56조의2제1항).
- 나. 중대재해 발생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하여금 고용노동부장 관이 실시하는 원인조사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, 조사에 필요한 권한 등을 정비함(안 제56조, 제162조, 제162조의2 등).
- 다. 고용노동부장관은 1) 재해자와 유가족 등의 알 권리 및 실효적 권리구제와 2) 동종·유사재해 방지를 목적으로 중대재해 발생 6개월 내에 공단이 작성한 재해조사의견서를 공개하되, 유가족 등이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발생 3개월 내에 교부하도록 함(안 제56조의

2제2항 등).

- 라. 고용노동부장관은 1) 재해자와 유가족 등의 알 권리 및 실효적 권리구제와 2) 동종·유사재해 방지를 목적으로 검사의 공소제기 이후 중대재해사건의 수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되, 재해자 또는 그 가족 등이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 이후에 반드시 교부하도록 함(안 제56조의3제1항 등).
- 마. 이 법 시행일 전에 작성된 재해조사의견서(재해원인조사의견서) 및 수사결과보고서에 관해서도 고용노동부장관의 공개 또는 교부의 무를 규정함(부칙 제3조부터 제5조까지).

#### 법률 제 호

##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6조제1항 중 "조사할 수 있다"를 "조사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제1항"을 "제1항 및 제2항"으로, "고용노동부장관"을 "고용노동부장관, 관계 전문가 또는 공단"으로 한다.

- 이 경우 재해발생의 기술적, 관리적, 조직적 원인에 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재해 발생의 기술적, 관리적, 조직적 원인에 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원인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원인조사에 참여하는 공단은 재해의 발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출입하거나 해당 사업장 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등을

할 수 있다.

제56조의2 및 제5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6조의2(재해조사의견서 공개·교부 등) ① 공단은 중대재해 원인조 사에 참여한 때에는 해당 중대재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단의 의견서(이하 "재해조사의견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1. 재해발생 사업장의 개요
- 2. 재해자의 인적사항 및 상해정도
- 3. 재해의 경위 및 내용
- 4. 작업현장의 위험요인 및 추정되는 재해발생원인
- 5. 동종 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
-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재해자 또는 그 가족 (재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상속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와 제56 조의3에서 같다)의 알 권리 및 실효적 권리구제와 동종·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재해조사의견서를 해당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6 개월 내에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재해자 또는 그 가족이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.
-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재해조사의견서 작성이 시험, 분석, 전문가 검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 작성이 완료되는 때까지 제2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- ④ 제2항에 따라 재해조사의견서를 공개·교부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정보에 관한 부분은 제외할 수 있다.
- 1.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정보
- 2.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정보
- ⑤ 제4항에 따라 공개·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와 재해조사의견서 공개·교부의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56조의3(중대재해 수사결과보고서 공개·교부 등) ① 고용노동부장 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재해자 또는 그 가족의 알 권리 및 실효적 권리구제와 동종·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이 법 또는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범죄를 수사한 결과를 기재한 서류(이하 "중대재해 수사결과보고서"라 한다)를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공개할 수 있고, 재해자 또는 그 가족이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이 공개됨으로써 향후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내용 외의 부분을 분리하여 공개·교부할 수 있다.
  - ② 중대재해 수사결과보고서의 공개·교부 범위에 관하여는 제56조 의2제4항·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재해조사의견서"는

- "중대재해 수사결과보고서"로 본다.
- ③ 중대재해 수사결과보고서 공개·교부의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
- 제16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3의2. 제56조에 따라 중대재해조사에 참여하는 자 제1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162조의2(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) 제56조제1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및 제56조제2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한 공단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제170조제2호 중 "제56조제3항"을 "제56조제5항"으로, "고용노동부장 관"을 "고용노동부장관, 관계 전문가 또는 공단"으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단의 중대재해 원인조사 참여 등에 관한 적용례) 제56조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중대재해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재해조사의견서의 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)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6일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부터 적용한다. 이 경우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중대재해에 관하여 공단이 종전에 작성한

재해조사의견서·재해원인조사의견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 내에(다만, 시행일 당시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건은 발생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이전에)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

제4조(수사결과보고서의 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) 제5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6일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부터 적용한다. 이 경우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중대재해에 관하여 근로감독관이 종전에 작성한 수사결과보고서 중 재해자 또는 그 가족(재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상속인을 포함한다)이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(다만, 시행일 당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건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) 제56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부하여야 한다.

제5조(재해조사의견서 및 수사결과보고서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일 전에 작성되었거나 작성 중인 공단의 재해조사의견서·재해원인조사의견서 및 근로감독관의 수사결과보고서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재해조사의견서 및 수사결과보고서로 본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56조(중대재해 원인조사 등) ①      | 제56조(중대재해 원인조사 등) ①     |
|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<u>조</u> | <u>조</u>                |
| <u>사할 수 있다</u> . <후단 신설> | 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해발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생의 기술적, 관리적, 조직적 원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인에 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.         |
| <u> &lt;신 설&gt;</u>      |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재해 발생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 기술적, 관리적, 조직적 원인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에 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립을 위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항에 따른 원인조사에 참여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산업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객관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 고용노</u>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러하지 아니하다.               |
| <u>&lt;신 설&gt;</u>       | ③ 제1항에 따른 원인조사에 참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여하는 공단은 재해의 발생 원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재해가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발생한 사업장에 출입하거나 해        |

② (생략)

③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 장을 훼손하거나 <u>제1항</u>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.

① (생 략) <신 설> 당 사업장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다.

- ④ (현행 제2항과 같음)
- <u>⑤</u> -----

-----<u>제1항 및 제2항</u>---고용노동부장관, 관계 전문가 또는 공단-----

----**.** 

- ⑥ (현행 제4항과 같음)
- 제56조의2(재해조사의견서 공개 ·교부 등) ① 공단은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참여한 때에는 해당 중대재해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된 공단의 의견 서(이하 "재해조사의견서"라 한 다)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1. 재해발생 사업장의 개요
  - 2. 재해자의 인적사항 및 상해 정도
  - 3. 재해의 경위 및 내용
  - 4. 작업현장의 위험요인 및 추 정되는 재해발생원인
  - 5. 동종·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
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재해자 또는 그가족(재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상속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와 제56조의3에서 같다)의 알권리 및 실효적 권리구제와 동종・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재해조사의견서를 해당 사건이발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재해자 또는그 가족이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.

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재 해조사의견서 작성이 시험, 분 석, 전문가 검토 등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 작성이 완료되는 때까지 제2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 다.

④ 제2항에 따라 재해조사의견 서를 공개·교부하는 경우에 다 음 각 호의 정보에 관한 부분은 제외할 수 있다.

1.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

<신 설>

한 법률」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정보

- 2.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한 법률」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정보
- ⑤ 제4항에 따라 공개·교부하 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와 재해조사의견서 공개·교부 의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.

제56조의3(중대재해 수사결과보 고서 공개・교부 등) ① 고용노 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재해자 또는 그 가족의 알 권리 및 실효적 권리구제와 동종 • 유 사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이 법 또는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 한 법률」에 따른 범죄를 수사 한 결과를 기재한 서류(이하 "중대재해 수사결과보고서"라 한다)를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 가 제기된 이후에 공개할 수 있 고, 재해자 또는 그 가족이 교부 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이를 교부하여야

제162조(비밀 유지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 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 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.

1. ~ 3. (생 략) <신 설> 한다. 다만,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이 공개됨으로써 향후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내용 외의 부분을 분리하여 공개·교부할 수있다.

② 중대재해 수사결과보고서의 공개·교부 범위에 관하여는 제 56조의2제4항·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재해조사의 견서"는 "중대재해 수사결과보 고서"로 본다.

③ 중대재해 수사결과보고서 공 개·교부의 방법 및 절차는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.

| 세162조(비밀 유지)     |
|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
| ,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
| ·.               |
| 1. ~ 3. (현행과 같음) |

3의2. 제56조에 따라 중대재해

4. ~ 13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제17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저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- 1. (생략)
- 2. 제56조제3항(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현장 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 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

3. ~ 8. (생략)

| 조사에 | 참여하는 | 자 |
|-----|------|---|
|     |      |   |

4. ~ 13. (현행과 같음)

제162조의2(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으로 보다.

| <u> </u>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
| 세170조(벌칙)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
| 1. (현행과 같음)       |
| 2. <u>제56조제5항</u> |
|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
| 고용노동부장            |
| 관, 관계 전문가 또는 공단   |

3. ~ 8. (현행과 같음)